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신사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3월 13일 김상택 의원등 7명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ㅇ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03년3월13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상택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의 제24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규정중 공업지역의 건폐율이 공장신축의 경우 70퍼센트까지 가능 하던 것을 도시계획법(2000. 1. 28법률 제6243호) 및 동법 시행령(2000. 7. 1. 대통령령 제16891호)의 개정으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전문 개정 하면서,

○ 건폐율을 60퍼센트로 낮추어 규정하므로 인해 공장건물의 면적 감소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창고시설등을 별도의 가설건축물로 확보하여야 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고, 불법건축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,

○ 또한, 부천시 인근 자치단체의 대부분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2호,제13호의 건폐율을 7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어 부천시도 조례를 개정 도시미관의 증진 및 양호한 환경조성은 물론 기업활동에 다소나마 유리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중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(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)로 상향 조정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공업지역의 건폐율이 공장신축의 경우 70% 까지 가능하던 것이 언제, 무슨이유로 60%로 하향 조정 되었는가?	○당초 우리시도 건폐율이 70%까지 가능하던 것이 건축법 및 시행령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면서 2001년도 도시계획조례를 전문 개정 하면서 낮추게 되었음.
○건폐율을 60%로 낮추면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가?	○공장 건물 신축시 공장건물 면적이 감소하게 되어 창고시설등을 별도의 가설건축물로 확보하여야 하는등 상당한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음.
○건폐율이 60%인 경우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텐데 70%로 상향 조정 될 경우 주차장 공간이 줄어들어 공장지역의 이면도로 등이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?	○주차장 공간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음. 건폐율이 60%일 경우에도 기업에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.
○건폐율이 70%에서 60%로 하향조정하여 조례개정시 기업체에서 이의제기는 없었는가?	○현행 규정에 따라 공장의 건축바닥면적이 정해지므로 인해 기업활동에 애로가 있어 관련단체인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건의서가 제출된 바 있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　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○ 없　음

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09호
의결연월일	2003.3.19 (제103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3. 13

제 출 자 : 김상택 의원 등 7인

ㅁ 제안이유

○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의 제24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규정 중 공업지역의 건폐율이 공장신축의 경우 70퍼센트까지 가능하던 것을 도시계획법(2000. 1. 28.법률 제6243호) 및 동법 시행령(2000. 7. 1. 대통령령 제16891호)의 개정으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전문 개정하면서

○ 건폐율을 60퍼센트로 낮추어 규정하므로 인해 공장건물의 면적 감소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창고시설 등을 별도의 가설건축물로 확보하여야 하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불법건축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

○ 또한, 부천시 인근 자치단체의 대부분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제1항제12호, 제13호의 건폐율을 7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어 부천시도 조례를 개정 도시미관의 증진 및 양호한 환경조성은 물론 기업활동에 다소나마 유리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(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)로 상향 조정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중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일반공업지역 : 70퍼센트(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)

13. 준공업지역 : 70퍼센트(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지역안에서의 건폐율) ①(생략)	제24조(지역안에서의 건폐율) ①(현행과 같음)
1. ~ 11. (생략)	1. ~ 11. (생략)
12. 일반공업지역 : 60퍼센트(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70퍼센트)	12. 일반공업지역 : 70퍼센트(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)
13. 준공업지역 : 60퍼센트(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70퍼센트)	13. 준공업지역 : 70퍼센트(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)
14. ~ 16. (생략)	14. ~ 16. (생략)
②(생략)	②(생략)